

제3장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

사례 38

의사 부인 살인사건을 보도하면서 아무런 상관이 없는 신청인의 집을 마치 사건 현장이었던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1서울조정69 손해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한국방송공사 (KBS-1TV)
 중 재 부 : 서울제7중재부
 접 수 일 : 2011. 2. 8.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임신한 의사 부인 살인사건에 관해 보도하면서 사건현장과 같은 구조이며 당시 공실이던 옆집을 촬영한 영상을 자료화면으로 내보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살인사건과 전혀 무관한 자신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동의 없이 집을 촬영하여 생활이 침해당했다며 5천8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담당중재부는 이 사건기사에서 피해자가 신청인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했다.

조정대상보도

KBS-1TV: 「KBS 뉴스9」 프로그램 “만삭의 의사부인' 사망 원인 의문 증폭” 제하의 보도

(2011년 2월 7일자 21:00)

내 용 : 만삭의 20대 여성이 집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사망 원인을 놓고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유명 대학병원 의사인 남편을 용의자로 지목했지만, 남편은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 출산을 한 달 앞둔 29살 박모 씨가 지난달 14일 자신의 집 욕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서울 유명 대학병원 의사인 남편 31살 백모 씨는 오후 5시쯤 퇴근해 집안에서 숨진 부인을 발견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백씨는 부인이 욕실에서 실족해 숨진 것 같다고 말했지만, 부검 결과 박씨의 사인은 질식사로 판명됐습니다. 또 박씨의 손톱 밑 혈흔에서 남편의 DNA가 발견됐습니다.



▷인터뷰 : 최○○(마포경찰서 형사과장) : “사체 상태, 피의자 진술의 모순,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것, 부검 결과 등을 보면 사고사는 아니다.”

경찰은 남편 백씨를 용의자로 보고 지난 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일단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만삭인 박씨가 실족해 쓰러지면서 목이 눌러 질식사했을 가능성이 있고, 제3자에 의한 타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 임○○(남편 측 변호사) : “전날 부인한테 등을 긁어달라고 해서 등을 긁어줬고 그래서 손톱에 각질이 있었을 겁니다.”

경찰은 그러나 여전히 남편 백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보강수사를 벌인 뒤 늦어도 이번 주말까지 백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계획입니다.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58,000,000원을 지급하라.

사건처리결과

기각 결정

기각 결정서

주 문

신청인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신청인의 주장 요지

피신청인은 2011년 2월 7일자 KBS-1TV <뉴스9> 프로그램 『사망 원인 의문 증폭』 제목으로 ‘만삭 의사 부인 사망사건’을 보도하면서, 신청인이 입주 준비 중인 아파트의 욕실 내부 등을 촬영하여 배경화면으로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사건현장과 관련이 없는 자신의 집을 동의 없이 무단으로 침입하여 욕실 등을 촬영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자료화면’ 표기나 모자이크 처리 없이 그대로 보도함으로써 사생활이 침해됐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는 언론보도 등에 의한 피해의 배상에 대하여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할 것인데, 그 표현의 내용과 주위 사정을 종합하여 기사나 영상이 나타내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 그 피해자는 특정되었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방송에서는 신청인 아파트의 명칭, 호수 등이 직접 공개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촬영 당시 아파트 욕실 내부에 다른 아파트와 뚜렷이 구별되는 특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일반인이나 주위 사람들이 방송화면상으로는 그곳이 신청인의 아파트임을 인식하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신청인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은 언론중재법 소정의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그 이유가 없으므로, 언론중재법 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2. 18.



사례 39

진위 여부가 검증되지 않은 인터넷 게시글을 사진과 함께 기사화함으로써
신청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었다.

사 건 : 2011서울조정1047 손배청구

신 청 인 : 박 ○ ○

피신청인 : (주)디오데오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11. 9. 6.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SBS '짝' 프로그램에 출연한 신청인에 대한 해당 프로그램 게시판의 글을 그대로 인용, 불륜녀 의혹을 제기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불륜을 저지르지 않았고, 피신청인이 익명으로 쓰는 게시판의 글을 사실 검증도 없이 그대로 보도하여 신청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였으며, 해당 프로그램에 출연하였다 하더라도 공인이 아닌 신청인의 사진을 그대로 공개하여 초상권을 침해하였다며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2백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디오데오 : 『짝, 여자○호, 천사표? 신혼집 파탄낸 불륜녀? 과연 진실은 무엇?』 제하의 기사

(2010년 9월 1일자)

내 용 : 천사표 출연자라고 불렀던 여자○호가 불륜녀 의혹에 휩싸여 화제다.

지난 31일 방송된 '짝'에서는 애정촌에 입성한 ○○기 멤버들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여자○호는 '다른 분들이 다들 어리고 예뻐서 나는 아무에게도 선택받지 못할 것 같다. 이런 상황은 예상하고 나왔다. 나도 눈치가 있다.' 고 전했고 이어 '어릴 적 어머니가 돌아



가셨다. 결혼하면 아들만 있는 집에 시집가서 시어머니한테 엄마라고 부르면서 살고 싶다.’라고 말해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하지만 방송 후 시청자 게시판에 여자 ○호의 과거를 폭로하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글을 쓴 한 네티즌은 ‘제 신혼 침대에서도 주무시고 가셨던 그 분이 천사표로 등장하셨다. 결혼식 후 신혼집 문이 부서질 정도로 두드리며 소리를 질렀던 사람이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글의 전반적 내용을 요약하자면 글쓴이는 한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알고보니 그는 여자 ○호와 양다리를 걸쳤으며 결혼 직후 여자 ○호가 신혼집으로 찾아와 난동을 부려 결혼 한달만에 이혼하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아직 이글의 진위가 확실히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짝 제작진과 당사자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0,000,000원을 지급하라.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1년 9월 30일까지 200만 원을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이 1.항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지급기일 다음날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20%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신청인은 본 건 조정신청과 관련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1. 9. 21.



사례 40

신청인들이 경찰에 제공한 CCTV 영상을 무단으로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1서울조정1325 (2011서울조정1326과 병합) 손배청구

신 청 인 : 이○○, 박○○

피신청인 : 한국방송공사 (KBS-2TV)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11. 11. 24.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 보도에서 암보험금을 노린 꽃뱀 사기단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식당에서 피의자와 피해자가 대화를 하는 내용이 찍힌 CCTV화면을 방송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들은 해당 CCTV는 범죄 피해자를 위해 경찰에 제공했을 뿐인데 피신청인은 이에 대해 어떠한 동의도 구하지 않고 그대로 방송하여 신청인들의 신체 일부가 노출되고, 범죄를 밀고한 것처럼 비추어져 범죄 가해자로부터 보복을 당할 것이라는 불안감으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를 받고 있다며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2백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 보도

KBS-2TV : 「**이침뉴스타임**」 프로그램 「**암보험금 노린 꽃뱀사기단**」 제하의 보도

(2011년 11월 10일자 08:00)

내 용 : ▷앵커멘트 : 순진한 농촌 주민을 유혹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뜻어낸 혐의로 꽃뱀 사기단이 붙잡혔습니다.

무려 12명이 공모해서, 한두명도 아니고 무려 12명이 공모해서 피해자 한명을 속였다는데요. 주범을 잡고보니 더 기가 막혔다죠?

네, ○○ 기자 피해자와 친형제처럼 지내던 동네형님이 범행을 꾸몄다는데 정말 믿기 어렵네요.

네, 사람이 무섭긴 정말 무섭습니다.

전문배우 뺨치는 연기력으로, 앞에선 둘도 없이 좋은 이웃이자 형처럼 마음을 열게 하고는, 뒤에선 대규모 꽃뱀 사기단을 꾸려 뒤통수를 쳤습니다.

이들이 노린 건 암 투병중인 피해자 부인의 암 보험금 이었습니다.

그 파렴치한 사기극의 전말을 파헤쳤습니다.

▷리포트 : 지난달 1일 저녁, 전남 곡성에 있는 한 식당 인데요.

남자 두 명이 들어옵니다.

한 마을에 살며 친형제처럼 지내는 55살 강 모 씨와 64살 이 모 씨입니다.

잠시 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 두 명이 들어오는데요.

뒤쪽 테이블에 앉더니 남자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인터뷰 · 당시 상황 목격자(식당 종업원) : “(30대 여성이) 자기 동생이 오리를 너무 좋아 하는데, 우리 동생이랑 같이 먹으면 안돼요? 술 한 잔하자고 젊은 여자들이 (제안하니까) “오세요, 같이 먹게 이랬겠죠.”

여자 두명은 연신 술과 음식을 권하며 금세 친밀하게 굴었는데, 특히 유 모 여인은 초반부터 강 씨에게 대놓고 호감을 표시했습니다.

▷녹취 · 강○○(피해자 아들/음성변조) : “(그 여자가) 아빠한테만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고 아빠 같은 사람이 좋다니, 어쩐다니 그렇게 하셨나 봐요.”

못 마시는 술에 정신이 혼미해진 강씨. 1시간 뒤인 7시쯤, 유 여인의 손에 이끌려 가게를 나섭니다.

▷녹취 · 당시 상황 목격자(식당 종업원) : “계산을 하고 나가면서 여자가 남자 팔짱을 딱 끼더라고 요… 여기서 나갈때, 여자가 남자 팔짱을 딱 끼고, 노래방을 가 버렸어 ○○노래방으로

그날 밤 강 씨는 유 여인과 같이 보냈습니다.

이후로도 유 씨는 보고 싶다며 계속 연락을 해 왔습니다.

지난달 12일, 강씨는 집 근처 모텔에서 두 번째 만남을 가졌는데, 갑자기 낯선 남자 2명이 들이닥쳤습니다.

▷인터뷰 · 박○○(전남지방 경찰청 광역수사대) : “(이 여자는) 내 부인이고. (예전에) 집 나갔고 너 계속 만났지? 그리고 간통 고소하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었습니다.”

혼자 끄끙 앓던 강 씨는 평소 친형처럼 믿고 따라 온 이 모 씨에게 이 사실을 털어냈고, 이 씨는 자신이 여자의 남편을 한번 만나보겠다고 했습니다.

▷녹취·강○○(피해자 아들/음성변조) : “시골이라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지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거든요. 그래서 법적인, 경찰서도 한번 간 적 없고, 모르시더라고요 법에 대해서는 하나도...”

그리고 자신이 4천만 원에 합의를 봤다며 이만하면 잘 된 것이니 돈을 주고 빨리 일을 끝내자고 말했습니다.

4천만 원... 너무 큰돈인데요.

(중략)

어려운 합의를 대신 해 주는 척 하면서 공범들과 강씨 부인의 보험금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인터뷰·이○○(피해자 부인/음성변조) : “우리 집에서 돈을 남편에게서 받아가지고, 범인들한테 돈 주고 합의 받아서 온다는 날도 (공범들과) 돈 천 만 원씩 나누 후, 지 호주머니에 (돈 챙겨) 넣고 와서 내가 차려준 밥을 먹고, 남편 데리고 가서 벗집 나르라고 일도 시키고...”

어이없게도 이 씨는 끝까지 죄를 부인하면서 강 씨 가족을 헐박했다고 합니다.

▷녹취·강○○(피해자 아들/음성변조) : “경찰서에서는 다 시인을 했으면서도, (우리 집에) 와서는 무혐의다 나는 죄가 없다. 나중에 우리 집을 무고죄로 신고 하겠다.”

▷인터뷰·이○○(피해자 부인/음성변조) : “그 사람들이 주범인지는 진짜 몰랐고. 그 사람들이 진짜 주범일거란 생각도 안하고 딱 그 사람들이 주범이라고 해놓고 보니까 어이가 없더라고요. 진짜 배신감 그런 배신이 없고 ...”

경찰은 주범 이 씨와 박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일당 10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이들 사기꾼 꽃뱀 일당이 다른 농촌마을에서도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일금 오천만원을 지급한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2,000,000원을 위자액으로 지급하기로 하되, 그 지급기한은 2011년 12월 20일로 한다.

2. 피신청인이 위 1.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3.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의 외주제작사로 하여금 1.항을 이행하도록 할 수 있다.

4. 신청인들은 조정대상보도를 방송한 것과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임직원에게 일체의 민·형사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1. 12. 1.

